

기업 도산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분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의 안내

I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의 안전망(safety net)으로 기업 도산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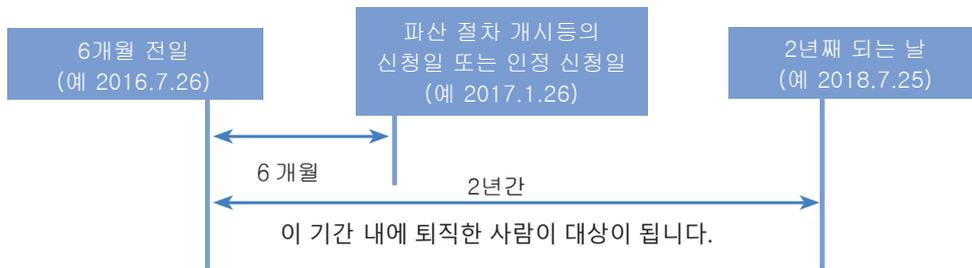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체당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기구가 그 체당금 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승낙을 얻어 임금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사업주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II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입니다.

- 1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노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한 사업주(법인, 개인 불문.)에 고용되어 기업 도산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노동 기준법 제9조의 노동자로 한정한다).
- 2 재판소에의 파산 절차 개시 등의 신청일(법률상 도산의 경우)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 대한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사실상 도산의 경우)의 6개월 전일부터 2년 사이에 해당 기업을 퇴직한 분 (주)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재판소에 파산 절차 개시 등의 신청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서의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3 미지급 임금금액 등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증명(법률상 도산의 경우)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의 확인(사실상 도산의 경우)을 받은 분

I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

II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III 체당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기간

IV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미지급 임금액

V 체당금 지급되는 금액

VI 체당금 지급의 청구 절차

VII 체당금 지급의 지급

VIII 부정수령을 했을 경우

IX 체당금 지급의 구상

X 「立替払請求権取得等 告知」(退職所得申告書) 기입 방법

노재보험의 적용 사업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동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면 농업 수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노동 기준법 제9조에 규정된 노동자로 한정한다.)

도산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파트·아르바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동거 친족에 대해서는 그 동거의 친족이 비록 사업장에서 형식상 노동자로서 일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와 이익을 같이하고 사업주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노동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내 노동법에 의한 부업 등에 종사하는 가내 노동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대표권을 가지는 회사 임원 등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도산

(1) 법률상 도산

파산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파산법)·특별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명령(회사법)·재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민사 재생법)·갱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회사 갱생법)

(2) 사실상 도산(중소기업 사업주만 해당)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 활동이 정지되고,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한편,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

가) ‘사업 활동 정지’라 함은

사업장이 폐쇄되고 노동자 전원이 해고되는 등으로 그 사업 본래의 사업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의 폐지를 위해서 필요한 청산 활동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사업 규모를 축소해도 그 사업 본래의 사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업의 재개의 의도를 포기하거나 청산 활동에 들어가는 등에 의해 재개할 가망이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다)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되는 자산이 없는 한편 자금 차입 등을 해도 임금 지급의 전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채액이 자산액을 웃도는 이른바 채무초과인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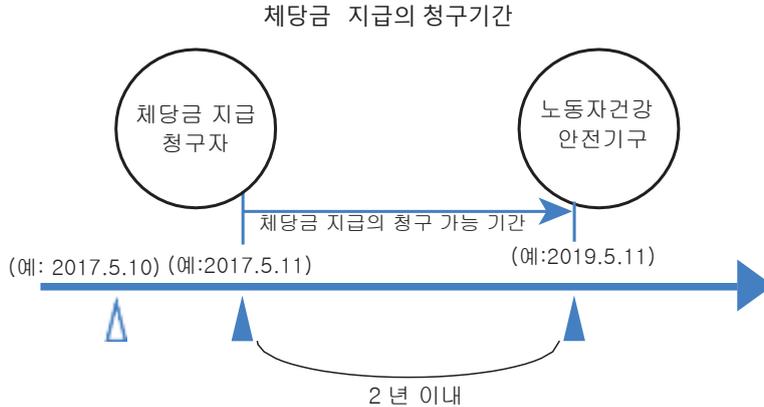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수
일반 산업 (도매업·서비스업·소매업은 제외)	3억 엔 이하의 법인	300 인 이하
도매업	1억 엔 이하의 법인	100 인 이하
서비스업	5,000만 엔 이하의 법인	100 인 이하
소매업	5,000만 엔 이하의 법인	50 인 이하

III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파산 등 법률상 도산인 경우는 재판소에 의한 파산 절차 개시 등의 결정일 또는 명령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이 도산 인정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난 경우는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IV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미지급 임금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의 6개월 전일부터 기구에 대한 체당금 지급 청구일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있는 '정기 임금(※1)' 및 '퇴직 수당(※2)'입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 총액이 2만원 미만일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 마감일 : 매월 20일 지급기일 : 당월 26일



(주) 4월분 임금(2017. 3. 21~2017. 4. 12)는 일할계산 됩니다.

I 미지급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
II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III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IV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미지급 임금
V 체당금 지급되는 금액
VI 체당금 지급의 청구 절차
VII 체당금 지급의 기구
VIII 부정수당을 했을 경우
IX 체당금 지급의 구상
X 「立替払請求権取得申付書」·「退職所得申告書」의 기입방법

※1 정기 임금

노동 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예 : 기본급·가족수당·통근수당·시간 외수당 등)으로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 등 법정 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됩니다.

※2 퇴직 수당

퇴직 수당은 노동협약,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등에 근거해 지급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 등의 사외 적립의 퇴직금 제도에 가입하여 타 제도로부터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되는 금액의 확정을 기다린 후,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3 일할 계산

월급제(결근해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는 완전 월급제를 포함합니다.)로 퇴직일이 임금 계산 기간의 도중의 날인 경우는 퇴직일 이전의 노동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일할 계산의 방법>

취업규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 일수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일할 계산한 임금액' = '월급 및 월정의 각종 수당(직무 수당·가족 수당·통근수당 등)' × '실노동 일수' ÷ '소정 노동 일수(달에 따라 소정 노동 일수가 다른 경우는 연간 소정 노동 일수를 12월로 나눈 평균 소정 노동 일수)'

※4 해당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상여금 기타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해고 예고 수당, 임금의 연체 이자, 연말조정세금 환부금, 위로금·축하금 명목의 혜택적 또는 복리후생상의 급부,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용품비 등은 해당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

지급되어야 할 정기 임금 및 퇴직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나 사업주의 채권에 근거해 매월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택료, 회사로부터의 물품 구입대금, 대출금, 반제금 등이 있는 경우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된 후의 금액이 됩니다.

V

체당금 지급되는 금액

체당금이 지급되는 금액은 미지급 임금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미지급 임금 총액에는 퇴직일의 나이에 상응하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액을 넘을 때는 체당금 지급금액은 한도액의 100분의 80이 됩니다.

퇴직일의 나이	미지급 임금 총액의 한도액	체당금 지급 상한액
45세 이상	370만 엔	296만 엔
30세 이상 45세 미만	220만 엔	176만 엔
30세 미만	110만 엔	88만 엔

- 예 1 퇴직일의 나이 32세, 미지급 임금 총액 170만엔(정기 임금 50만엔, 퇴직 수당 120만엔)인 경우 미지급 임금 총액의 170만엔이 30세 이상 45세 미만의 한도액 220만엔을 넘지 않으므로, 체당금 지급금액=170만엔×0.8=136만엔이 됩니다.
- 예 2 퇴직일의 나이 48세, 미지급 임금 총액 470만엔(정기 임금 150만엔, 퇴직 수당 320만엔)인 경우 미지급 임금 총액의 470만엔이 45세 이상의 한도액 370만엔을 초과하므로, 체당금 지급금액은 체당금 지급의 상한금액 296만엔이 됩니다.

VI

체당금 지급의 청구 절차

'법률상 도산의 경우'와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청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1 법률상 도산의 경우 청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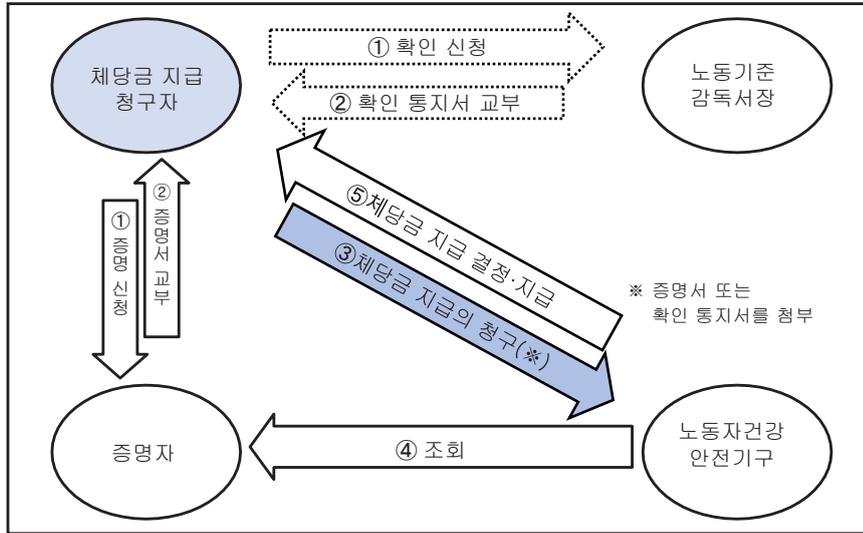
- (1)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아래의 도산의 구분에 따른 증명자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 시 필요 사항에 대한 증명을 신청합니다.

도산의 구분	증명자
파산	파산 관재인
특별 청산	청산인
민사 재생	재생 채무자(관재인)
회사 갱생	관재인

- (2) 파산 관재인 등 증명자로부터 증명서가 교부되면,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立替払請求書(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증명서에서 절취하지 말고 기구에 송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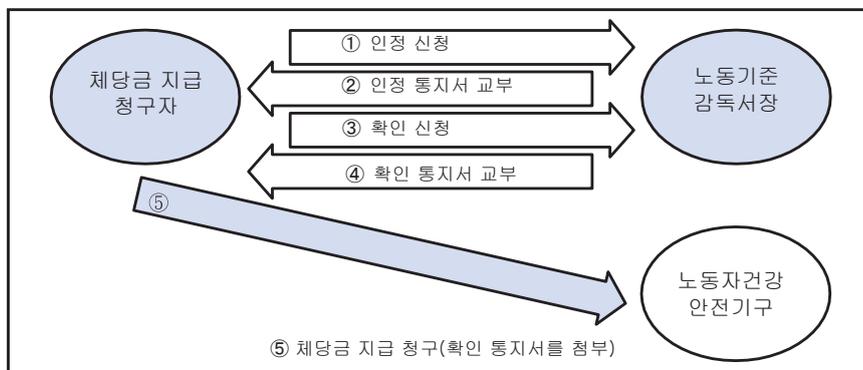
I 미지급임금제도
II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III 체당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기간
IV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미지급 임금
V 체당금 지급되는 금액
VI 체당금 지급의 청구 절차
VII 체당금 지급의 지급
VIII 부당 수급에 대한 경우
IX 체당금 지급의 구상
X 「立替払請求書(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 기입방법

- (3) 체당금 지급 청구 시 필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증명을 파산 관재인 등 증명자로부터 얻지 못한 경우는 체당금 지급청구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증명을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해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세한 내용은 소명 자료나 증명자가 교부한 증명서 등을 지참한 후 가장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로 상담해 주십시오.



2 사실상 도산의 경우 청구 절차

- (1)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이 정지되고,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한편,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 인정신청을 합니다. 인정신청은 해당 사업장을 퇴직한 체당금 지급 청구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그 중의 1명이 인정을 받으면 그 효과는 다른 퇴직 노동자에게도 미칩니다.
- (2) 노동기준감독서장으로부터 인정 통지서가 교부되면, 체당금 지급청구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 시 필요 사항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합니다.
- (3) 노동기준감독서장으로부터 확인 통지서가 교부되면,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立替払請求書(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확인 통지서에서 절취하지 말고 기구에 송부해 주십시오.



선원과 관련되는 체당금 지급의 청구 절차

선원법 제1조에 규정된 선원에 대해서는 「立替払請求書(체당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처가 지방 운수국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 법률상 도산의 경우

- (1)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파산 관재인 등의 증명자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 시 필요 사항에 대한 증명을 신청한 후 증명서가 교부되면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立替払請求書(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증명서에서 절취하지 말고 지방 운수국에 송부해 주십시오.
- (2) 체당금 지급 청구 시 필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증명을 파산 관재인 등 증명자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경우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지방 운수 국장에 대해서 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명 자료나 증명자가 교부한 증명서 등을 지참한 후 가장 가까운 지방 운수국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2 사실상 도산의 경우

- (1)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지방 운수 국장에게 선원 수첩을 제시한 후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인정 통지서가 교부되면 지방 운수 국장에게 선원 수첩을 제시한 후 체당금 지급 청구 시 필요 사항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합니다.
- (2) 지방 운수 국장으로부터 확인 통지서가 교부되면, 체당금 지급 청구자는 「立替払請求書(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확인 통지서에서 절취하지 말고 지방 운수국에 송부해 주십시오.

VII

체당금 지급금의 지급

기구는 제출된 「未払賃金の立替払請求書(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결정·지급 통지서(퇴직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표·특별징수표를 포함.)를 청구자에게 송부하고, 청구자가 지정한 청구자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체당금 지급금을 이체합니다.

또한 체당금 지급금은 정기 임금분, 퇴직 수당분 모두 조세 특별조치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퇴직 소득으로 취급되어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 소득 공제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 청구서 하단의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기입·날인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	퇴직 소득 공제액
20년 이하의 경우	40만 엔 × 근속 연수 (80만 엔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80만 엔)
20년 초과 경우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 연수 - 20년)

VIII

부정 수급을 했을 경우

허위 및 기타 부정 행위에 의해 체당금 지급금을 수급한 경우나 사업주가 부정하게 가담하여 허위 보고 또는 증명을 한 후, 체당금 지급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의해 체당금 지급금을 취득한 사람 및 거기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및 기타 부정의 행위를 통해 체당금 지급금을 취득한 사람이나 거기에 가담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체당지급된 금액의 반환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이른바 배로 갚음)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1 구상권의 행사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기구는 민법 제499조의 규정에 따라 체당금 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승낙을 얻어 임금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됩니다.

기구는 국가의 채권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위 취득한 임금채권으로 사업주 등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상 도산의 경우는 파산관재인 등에게 그 달 안에 체당금 지급한 분을 합하여 다음 달 초에 대위 취득 및 지급내용을 통지하고, 파산관재인 등이 임금채권에 대하여 재판소에 신고하고, 그 회답을 받은 뒤 다음 달 말까지 파산채권 신고서 또는 파산채권 명의변경 신고서를 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달 안에 체당금 지급한 분을 합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내용을 통지하는 동시에 임금채무의 변제를 청구합니다. 다만, 기구에서 체당금 지급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파산·회사 갱생의 경우

- 가) 파산 관재인 또는 관재인에게 임금채권의 대위 취득을 통지
- 나) 재판소에 채권 신고 또는 채권자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파산 절차에 참가
- 다) 재단 채권의 변제, 우선적 파산 채권의 배당

(2) 민사 재생·특별 청산의 경우

- 가) 재생 채무자(관재인) 또는 청산인에게 임금채권의 대위 취득을 통지 및 변제의 청구
- 나) 재생 채무자(관재인) 또는 청산인에게 채무 승인서, 변제 계획서의 제출 의뢰 및 변제의 청구

(3) 사실상 도산의 경우

- 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체당금 지급의 통지 및 임금채무의 변제 청구
- 나) 변제의 독촉
- 다) 필요에 따라 압류, 가차압, 저당권의 설정, 민사 소송의 제기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전

2 체당금 지급금의 총당

체당금 지급금의 총당 순위는 민법 제488조와 기구 업무방법서에 따라 먼저 퇴직 수당에 총당한 후 정기 임금에 총당합니다. 이때 정기 임금의 변제 기일이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변제 기일이 도래한 순서에 따라 총당하면 됩니다.

또한 파산 절차에서는 기구의 체당금 지급금은 변제 기일이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실무상 재단채권 부분과 우선적 파산채권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여 배분하면 됩니다.

기입·날인 시 주의사항

- 기입 사항은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정자체로 기입해 주십시오.
- 테두리 안으로 기입하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청구서 및 신고서 각각에 날인해 주십시오.
- 기입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정정하는 곳을 이중선으로 지운 후 정정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 제출 전에 기입누락, 잘못 기입한 사항, 날인누락, 정정했다면 정정인의 누락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 청구서 및 신고서에 기입누락, 날인누락 등이 있는 경우는 확인을 위해 기구가 문의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체당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청구서 및 신고서의 기입 방법 등에 대해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노동자건강안전기구 미지급 임금 체당금 지급 상담 코너 또는 가장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 「未払賃金の立替払請求書(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청구서)」의 기입 방법

1 | 우선 '청구 연월일'을 기입합니다.

이 청구서를 기구에 발송하는 날을 기입해 주십시오.

2 | '청구자 이름'을 기입합니다.

- (1)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을 기입해 주십시오. 혼인 등에 의해 증명서 또는 확인 통지서에 기재된 '성'이 변경된 경우는 호적 등본 또는 호적 초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 (2) 반드시 후리가나를 기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의 명의로 동일한 후리가나를 기입해 주십시오.
- (3) 자필 서명이 아닌 경우 반드시 날인을 해 주십시오.
- (4) 남녀 중 어느 하나에 ○표를 해 주십시오.

3 |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서력이 아닌, 해당하는 원호에 ○표를 하고 연호(<예 : 쇼와>52<년>)를 기입해 주십시오.

4 | '현주소·전화 번호'를 기입합니다.

-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또, 반드시 우편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2) 현재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써 주십시오. 주택 단지·아파트·맨션·사택·숙소 또는 기숙의 경우는 그 명칭·동·번호 또는 기숙처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3) 전화 번호는 유선 전화 번호 외 휴대 전화를 가지고 계신 경우 그 번호도 기입해 주십시오.

5 | '체당금 지급 청구 금액'을 기입합니다.

- (1) 청구서의 우측에 있는 「**証明書**(증명서)」 또는 「**確認通知書**(확인 통지서)」 하단의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금액 계산'에 있는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지급 임금 총액 또는 한도액'을 잘못 기입한 경우는 청구자가 정정해 주셔야 하며, 그 만큼 지급이 늦어지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2)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하여 기입하고, 자릿수를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금액 앞에 공란이 있는 경우는 직전의 공란에 '0'을 기입해 주십시오.

6 | '체당금 지급금 이체 금융기관'을 기입합니다. (15 페이지의 각종 신고 일람 참조)

- (1) 반드시 청구자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기입해 주십시오. (청구자 본인 이외의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법인명·상호명이 기재된 계좌 명의도 이체 불가합니다.)
 - (2) 청구자 본인의 보통예금 통장을 확인하고, 금융기관명·지점명·지점 번호·보통예금 계좌 번호를 틀리지 않게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지점 통폐합에 의해 지점명·지점 번호가 변경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 (3) 유조은행을 지정한 분은 이체용 지정명·지점 번호·계좌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또, 저금통장의 사본(앞표지의 뒷면(이체용 지정명·지점 번호·계좌 번호가 인자되어 있는 부분))을 첨부해 주십시오.
 - (4) 외국인인 오입금 방지를 위해 예금 통장의 사본(앞표지의 뒷면(계좌 명의인·계좌 번호·지점명 등이 인자되어 있는 부분))을 첨부해 주십시오.
 - (5) 해외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의 서류(A~C 모두)를 「**未払賃金の立替払請求書**(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A 「**海外送金申請書**(해외 송금 신청서)」 (신청서는 기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 B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a와 b 모두)
 - a 채류 카드(양면)의 사본
 - b 여권의 사본(얼굴 사진이 있는 페이지 및 일본 입국일·출국일이 기재된 모든 페이지)
 - C 송금처 은행 통장의 사본(통장이 없는 경우는 계좌 개설을 증명하는 서류)
- ※ 1. 체당금 지급 청구액에서 이체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 2.15 페이지에 기재된 각종 신고 일람 '외국인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참조해 주십시오.

◎立替払金振込先金融機関の指定 (請求者本人名義の普通預金口座に限ります。)

金融機関名		(番号を○で囲んでください。)
フリガナ		① 銀行 ② ゆうちょ銀行(郵便局) ③ 信託銀行 ④ 信用金庫 ⑤ 信用組合 ⑥ 労働金庫 ⑦ 農業協同組合(農業協同組合は利用できません。)
本・支店(支所)名 (出張所)		(注意事項) 1 ゆうちょ銀行を指定される方は、振込用の店名・店番・口座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ゆうちょ銀行を指定される方は、預金通帳の写し(名義人・口座番号がわかる部分)を添付してください。 3 外開籍の方(日本語に不安がある方)は、誤振込防止のため、2と同様に預金通帳の写しを添付してください。
本・支店番号		
普通預金口座番号		
フリガナ		
口座名義人		

이상은 「**未払賃金の立替払請求書**(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청구서)」의 기입 방법입니다.

■ 이름, 주소, 이체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파산 관재인이 증명하고 있는 이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이체 금융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청구자의 이름·주소·이체 금융기관 변경 신고'를 당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각각의 항목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전화·메일에 의한 변경은 받지 않습니다.

- ※1. '주민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본적지,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2.15 페이지에 기재된 각종 신고 일람을 참조해 주십시오.

The image shows a Japanese form titled '債権者名義の未払い賃金請求者の氏名・住所・振込金融機関変更届書' (Form for Reporting Changes in Name, Address, and Remittance Bank of Unpaid Wages Claimant). It contains several sections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contact details, and remittance bank information.

■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대해

체당금 지급금은 정기 임금분, 퇴직 수당분 모두 조세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퇴직 소득으로 취급되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 소득공제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 청구서 하단의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기입·날인이 있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미기입·날인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 지급금액의 20%상당액이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체당금 지급금 이외에 퇴직 수당이 있는 경우(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 등의 사외 적립의 퇴직금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등)는 체당금 지급 청구서 하단의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가 아닌, 정규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세무서 비치, 국세청 또는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해당 퇴직 소득과 관련된 「退職所得の源泉徴収票・特別徴収票(퇴직 소득의 원천징수표·특별 징수표)」(사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기 신고서는 그 명칭 때문에 퇴직 수당과 관련된 체당금 지급의 경우에만 필요하고, 정기 임금과 관련된 체당금 지급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퇴직 수당에 대한 미지급은 없고, 정기 임금만이 미지급된 경우에도 반드시 기입·날인해 주십시오.

- ※1. 개인 번호(마이 넘버)는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15 페이지에 기재된 각종 신고 일람을 참조해 주십시오.

- I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
- II 받을 수 있는 사람 체당금 지급
- III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체당금 지급
- IV 미지급 임금의 대상이 되는 체당금 지급
- V 체당금 지급되는 금액
- VI 체당금 지급의 청구 절차
- VII 체당금 지급의 기입
- VIII 부정 수급을 했을 경우
- IX 체당금 지급의 기입
- X 「立替私請求書」에 기입된 「退職所得申告書」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의 기입 방법

1 | '퇴직연도'를 기입합니다.

'년분'란에 청구자가 퇴직연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헤이세이29 (2017)년1월에 퇴직한 경우라면 '29'라고 기입해 주십시오.

川崎北税務署長殿 市町村長殿	年分	提出日	上記立替私請求書記載請求年月日のとおり
-------------------	----	-----	---------------------

2 | '이름'을 기입합니다.

청구자 이름을 기입한 후 반드시 날인해 주십시오.

川崎北税務署長殿 市町村長殿	年分	提出日	上記立替私請求書記載請求年月日のとおり
氏名	印	退職年月日	年 月 日
退職した年の 1月1日現在の 住所	〒	あなたが退職 した会社にお ける勤続期間	自 年 月 日 年 至 年 月 日
現住所	上記立替私請求書記載のとおり	障害者になったことにより退職した事実の有無	有・無
非居住者の方は 氏名を記入		入国年月日	年 月 日
退職所得の支払者 住所及び名称	所在地 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木月住吉町1番1号	名称	独立行政法人 労働者健康安全機構

3 | '퇴직연도의 1월1일 현재 주소'를 기입합니다.

청구자가 퇴직연도의 1월1일 현재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퇴직한 해가 헤이세이29 (2017)년인 경우는 헤이세이29년1월1일 현재 주소(주민 등록된 주소)가 됩니다.

川崎北税務署長殿 市町村長殿	年分	提出日	上記立替私請求書記載請求年月日のとおり
氏名	印	退職年月日	年 月 日
退職した年の 1月1日現在の 住所	〒	あなたが退職 した会社にお ける勤続期間	自 年 月 日 年 至 年 月 日
現住所	上記立替私請求書記載のとおり	障害者になったことにより退職した事実の有無	有・無
非居住者の方は 氏名を記入		入国年月日	年 月 日
退職所得の支払者 住所及び名称	所在地 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木月住吉町1番1号	名称	独立行政法人 労働者健康安全機構

4 | '퇴직 연월일'·'퇴직한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을 기입합니다.

청구자가 해당 회사를 퇴직 연월일 및 근속 기간에 대해서 증명서 또는 확인 통지서의 '고용 연월일' 및 '기준 퇴직일'을 확인한 후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입사 연월일) 부터·(퇴직 연월일)까지는 증명서 또는 확인 통지서의 '고용 연월일'·'기준 퇴직일'에 적혀 있는 연월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 근속 기간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는 절상한 후 기입해 주십시오.

예) 근속 기간 10년15일의 경우 11년이 됩니다.

提出日	上記立替払請求書記載請求年月日の上より			「証明書」又は「補償通知書」				
退職年月日	年	月	日	届入年月日	年	月	日	
あなたが退職した会社における勤続期間	至	年	月	日	元	年	月	日
障害者になったことにより退職した事実の有無	有・無							
入国年月日	年	月	日					

5 | '장애로 인해 퇴직한 사실의 유무'를 기입합니다.

도산으로 인한 퇴직이므로 '무'에 ○표를 해 주십시오.

障害者になったことにより退職した事実の有無	有・無
-----------------------	-----

6 | 외국인의 경우는 '국적명' 및 '입국 연월일'을 기입하고,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非居住者の方は国籍名を記入	入国年月日	年	月	日
---------------	-------	---	---	---

외국인의 경우는 일본 국내의 세제의 적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정확하게 이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A~C 모두)】

- A 체류 카드 사본(양면)
- B 여권 사본 ('얼굴 사진이 있는 페이지'와 '일본 입국일·출국일이 기재된 모든 페이지')
- C 예금 통장 사본(앞표지의 뒷면(계좌 명의, 계좌 번호, 지점명 등이 기재된 부분))

이상의 필요 서류 A와 B를 통해 다음의 '일본 내 거주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과세가 됩니다. (체당금 지급 청구 금액, 근무 연수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본 내 거주 요건(기준 퇴직일 시점으로)
 - ① 1년 이상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고 있을 것.
 - ② 일본 국내에 있을 것.

단,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20%상당액)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 ※1. 조세조약(협정)에 관해서는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 ※2. 15 페이지 기재된 각종 신고 일람 '외국인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참조해 주십시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노동자의 상속인이 체당금 지급 청구자가 됩니다.

따라서 「立替払請求書(체당금 지급 청구서)」의 청구자란과 이체 금융기관란에 상속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체 금융기관명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는 대표자가 청구 수속을 위해 「代表者選任届出(대표자 선임 신고)」와 퇴직 노동자의 사망 및 청구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 대표자 선임 신고에 서명한 전체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 주십시오.

I	미지급 연명의 체당금 지급제도
II	받을 수 있는 사람 체당금 지급
III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체당금 지급
IV	미지급 연명의 대상이 되는 체당금 지급
V	체당금 지급하는 연명
VI	체당금 지급의 청구 절차
VII	체당금 지급의 지급
VIII	부정 수당을 행한 경우
IX	체당금 지급의 구상
X	「立替払請求書(체당금 지급 청구서)」, 「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 신고서)」, 「代表者選任届出(대표자 선임 신고)」의 기입 방법

<기입 예>

		機構整理番号	
未払賃金の立替払請求書			
賃金の支払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第7条の規定に基づき、次のとおり未払賃金の立替払を請求します。 なお、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安全機構が立替払をした場合は、民法第499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その立替 払金の額に相当する額の賃金請求権を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安全機構が代位取得することを承諾します。			
独立行政法人 労働者健康安全機構理事長 殿		請求年月日 平成29年 9月 1日	
請求者	フリガナ ケンコウ タロウ	性 男	生 年 月 日
	氏名 健康 太郎	健康印	51年 7月 1日
請求者	〒 211-0021	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木月住吉町1番1号	
	現住所	健康安全マンション2号室	
立替払請求金額	百万 拾万 万 千 百 拾 円	電話番号	
	1 5 6 8 0 0 0	(044) 431 - 8663	
◎立替払金振込先金融機関の指定 (請求者本人名義の普通預金口座に限ります。)			
金融機関名	健康	【番号を○で囲んでください。】 ① 銀行 ② ゆうちょ銀行(郵便局) ③ 信託銀行 ④ 信用金庫 ⑤ 信用組合 ⑥ 労働金庫 ⑦ 農業協同組合(漁業協同組合は利用できません。)	
フリガナ	アンゼン		
本・支店(支所)名 (出張所)	安全	(注意事項) 1 ゆうちょ銀行を指定される方は、振込用の店名・店 番・口座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ゆうちょ銀行を指定される方は、預金通帳の写し(名 義人・口座番号がわかる部分)を添付してください。 3 外国籍の方(日本語に不安がある方)は、誤振込防止 のため、2と同様に預金通帳の写しを添付してください。	
本・支店番号	1 2 3		
普通預金口座番号	1 2 3 4 5 6 7		
フリガナ	ケンコウ タロウ		
口座名義人	健康 太郎		
川崎北税務署長殿 市町村長殿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	
29年分		提出日	上記立替払請求書記載請求年月日のとおり
氏名	健康 太郎	退職年月日	平成29年 6月 20日
退職した年の 1月1日現在の 住所	〒031-0822 青森県八戸市白銀町7丁目7-7	あなたが退 職した会社 における勤 続期間	自平成12年 4月 1日 18年 至平成29年 6月 20日
現住所	上記立替払請求書記載のとおり	障害者になったことにより退職した事実の有無	有・無
非居住者の方は国 籍名を記入		入国年月日	年 月 日
退職所得の支払者 の住所及び名称	所在地 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木月住吉町1番1号	名称	独立行政法人 労働者健康安全機構
1 この立替払金のほかに、前に退職手当等の支払を受けたことがある方は、この申告書には記入しないで、税務署に備 えて付けてある「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以下「税務署備付申告書」)」に必要事項を記載のうえ提出してくだ さい。また、本年中に他に退職手当等の支払を受けたことがある方は、「税務署備付申告書」に支払者が交付した「退 職所得の源泉徴収票」を添付して提出してください。			
2 1以外の方は、必ず上欄の申告書(本控帳)に記入、押印してください。 なお、非居住者(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人。ア 日本国内に住所も居所も有しない人。イ 日本国内に住所がなく、かつ、日本国内に引き続き居所を有している期間が1年に満たない人。)の方は、所得税法及び租税条約に基づ く課税となりますので、上欄の申告書に国籍名、入国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上欄の申告書に記入がない場合又は「税務署備付申告書」の提出がない場合は、支払金額の20.42%相当額が退職所得 に係る源泉徴収税額となります。			

■ 해당금 지급 청구 시 청구서·증명서 등의 제출 방법

「未払賃金の立替払請求書(미지급 임금의 해당금 지급 청구서)」 및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를 기입한 후 제출 서류와 첨부 서류를 동봉하여 증명서 또는 확인 통지서를 절취하지 말고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처 >

〒211-0021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나카하라구 기즈키스미요시초 1번지 1호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 산업보건·임금 원호부 심사과

< 주의 >

해당금 지급 청구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금 지급금 이체 금융기관의 금융기관명·지점명·지점 번호·보통예금 계좌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에 기입·날인이 없는 경우는 확인을 위해 기구에서 문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해당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만약을 위해 제출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해당금 지급 청구 시 각종 신고 일람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첨부 서류	주의 사항
해당금 지급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 지급 청구서 하단 참조)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 (11 페이지 참조)	-	·해당금 지급금은 조세 특별조치법에 의해 퇴직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반드시 신고서에 기입·날인해 주십시오. ·기입·날인이 없는 경우는 해당금 지급금액의 20%상당액이 원천징수 됩니다.
다른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 등의 퇴직금 등)	(세무서 비치)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 (11 페이지 참조)	해당 퇴직 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표의 사본	·신고서는 국세청 또는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개인 번호(마이 넘버)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초은행을 이체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0 페이지 참조)	-	저금통장의 사본	저금통장 앞표지의 뒷면(타금융기관에의 이체용 지정명·지점 번호·계좌 번호 기재 부분)의 사본.
외국인이 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10, 13 페이지 참조)	해당금 지급 청구서	·예금 통장의 사본 ·채류 카드(양면) 및 여권 사본	·예금 통장 앞표지의 뒷면(금융기관명·지점명·계좌 번호·명의인 등 기재 부분)의 사본. ·여권은 열람 사진이 있는 페이지 및 일본 입국일·출국일이 기재된 모든 페이지의 사본. (13 페이지 6 참조) ·해외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는 「海外送金申請書(해외 송금 신청서)」가 필요하므로 당 기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10 페이지 6(5) 참조) ·통칭명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첨부 자료의 이름과 동일 인물임이 기재된 서류의 사본.)
이름을 변경한 경우		호적 등본 또는 호적 초본	이름의 변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의 사본
주소를 변경한 경우	미지급 임금의 해당금 지급 청구자의 이름·주소·이체 금융기관 변경 신고 (11 페이지 참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사본(앞면·뒷면), 주민표 사본 등	'주민표의 사본'은 본적지,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체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이체 금융기관 통장 사본	이체 금융기관 통장 앞표지의 뒷면(금융기관명·지점명·계좌 번호·명의인 등 기재 부분)의 사본.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13 페이지 참조)	대표자 선임 신고	·퇴직 노동자의 사망 및 청구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 ·대표자 선임 신고에 서명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청구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해당금 지급 청구서 하단에 있는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퇴직 소득 신고서)」의 기입·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양식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I	미지급 임금이 해당금 지급제외 노
II	해당금 지급금 수 있는 사람
III	해당금 지급 기간
IV	해당금 지급 대상인 되는 미지급 임금
V	해당금 지급 방법
VI	해당금 지급 청구 절차
VII	해당금 지급 지급
VIII	부정 수급을 행함
IX	해당금 지급 고상
X	「立替払請求書(해당금 지급청구서)」, 「退職 所得申告書(퇴직 소득 신고서)」의 기입 방법

노동자건강안전기구 미지급 임금 체당금 지급 상담 코너

체당금 지급에 관한 문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방을 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
-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제도에 관한 질문
- 청구 절차의 흐름
-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에 필요한 제출 서류·첨부 서류의 확인
- 이름·주소·수취 금융기관의 변경 방법
- 증명서 작성 방법

또한 청구자 개인의 체당금 지급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한정되므로, 본인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지급일에 대한 문의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결정·지급 통지서(우송)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번호

044-431-8663

상담 시간

토·일·공휴일은 제외 9 : 15~17 : 00

후생 노동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다이얼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 외국어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는 창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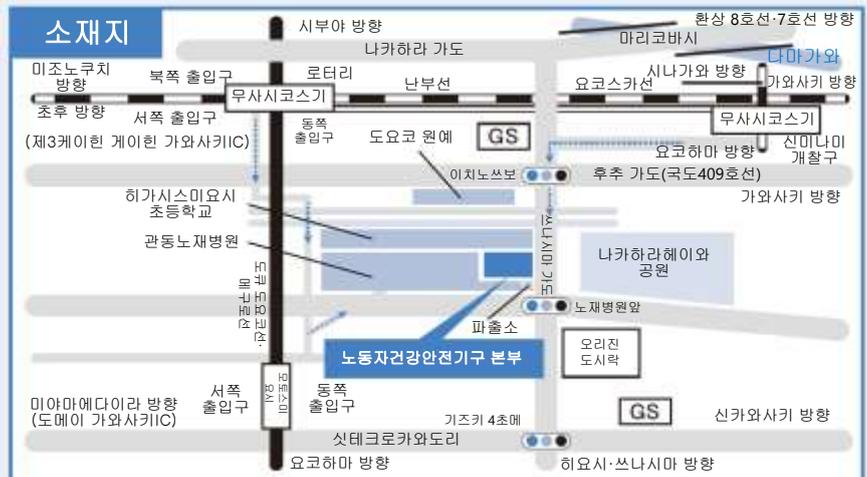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

임금 원호부 심사과

〒211-0021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나카하라구 기즈키스미요시초
1번지 1호

전화 번호 044 (431) 8662

URL <https://www.johas.go.jp>



R2.8